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식경제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태료 부과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,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(법률 제8725호, 2007. 12. 21. 공포, 2008. 6. 2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0817호, 2008. 6. 13. 공포, 6. 22. 시행)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대통령령 제 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(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)을 따르며,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1호	70	150	300
나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2호	60	130	250
다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1호	200		
라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3호	70	150	300
마.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4호	70	150	300
바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5호	300		
사.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2호	50	100	200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아.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3항	100		
자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5호	50	100	200
차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6호	70	150	300
카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6호	50	100	200
타.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7호	50	100	200
파.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중 1)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)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)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나)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때마다	법 제52조 제2항제8호	50	100	200
하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)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 2)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(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다)	법 제52조 제1항제7호	20 100		
거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8호	100		
너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9호	200		
더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10호	200		
러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9호	300		
머. 법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10호	300		
버. 법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11호	300		
서.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11호	50	100	200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어. 사업자단체,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,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12호	70	150	300
저.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12호	40	80	150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지식경제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지식경제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,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④ 지식경제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

연 락 처	(02) 2110 - 5446
-------	------------------